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관리법제의 주요 내용

이기평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08년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소위 '멜라민 분유사건' 이후¹⁾ 중국 정부는 영유아 식품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영유아 식품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영유아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 관련 법제는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등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법령과 영유아 식품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정, 그리고 영유아 수입식품, 특히 영유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수입유제품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영유아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다양한 법제 중,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1 中国奶制品污染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5%A5%B6%E5%88%B6%E5%93%81%E6%B1%A1%E6%9F%93%E4%BA%8B%E4%BB%B6/86604?fr=aladdin> (검색일: 2020. 6. 20).

2 최근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영싱현 소재 영유아제품판매점에서 단백질고체음료(일반식품)를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특수식품)으로 속여 유아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들에게 판매하고, 이 식품을 먹은 아동들에게 습진, 머리두드리기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난 아동식품안전사건으로 중국의 영유아 식품안전 이슈가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婴幼儿食品安全监管还需“环环相扣”, <http://www.tlnews.com.cn/2020年05月19日 08:47:18>, http://www.tlnews.com.cn/xwpd/tlxw/content/2020-05/19/content_9051687.htm (검색일: 2020. 5. 27).

II. 주요 법제 개관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에 관한 법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법실시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이하, 「실시조례」)³⁾는 식품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법규로서 영유아 식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포함하고 영유아 식품 관련 하위 규범의 근거가 된다. 예컨대, 「식품안전법」에서 영유아와 관련한 식품안전표준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⁴⁾ 또한 「식품안전법」은 생산경영이 금지되는 13가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을 포함하고 있다.⁵⁾

다음으로 영유아 식품에 관한 특별규범으로서 「영유아보조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婴幼儿辅助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 「영유아조제분유제품조제등록관리방법(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이하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각종 영유아 식품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食品安全国家标准)」 등이 있다. 여기서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공중의 신체건강 보장을 그 취지로 제정하는 집행이 강제되는 표준이며, 이외에 다른 식품에 대한 강제성 표준의 제정은 금지된다.⁶⁾ 또한 식품안전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식품안전국가표준과 성, 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제정한 식품안전지방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⁷⁾ 보건식품, 특수약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색식품에 속하지 않으며, 이들 특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지방표준의 제정은 금지된다.⁸⁾

마지막으로 영유아 수입식품에 관한 특별 규범으로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수출입유품⁹⁾검사시험검역감독관리방법(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 관련 주요 규범을 표로 정리한 <표-1>과 같다.

3 「식품안전법실시조례」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식품안전법」 제26조 제3호.

5 「식품안전법」 제34조 제5호.

6 「식품안전법」 제24조 및 제25조.

7 「실시조례」 제10조.

8 「실시조례」 제12조.

9 ‘유품(乳品)’은 우리말의 ‘유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관련 규정상 ‘유품’의 용어정의에 ‘유제품’이 ‘유품’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유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1〉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 관련 주요 규범

| 명칭 | 제정기관 및 제정일(시행일) |
|--|---|
| 「식품안전법」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2009. 2. 28. 제정, 2019. 12. 29. 개정 |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국무원, 2009. 7. 20. 제정, 2019. 3. 26. 개정 |
|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¹⁰⁾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이하 식약총국), 2020. 3. 1. 시행 |
|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¹¹⁾ | 식약총국, 2016. 8. 9. 발표 |
| 「영유아보조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 | 식약총국, 2017. 1. 10. 발표 |
|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 식약총국, 2016. 3. 15. 제정, 동년 10. 1. 시행 |
| 「영유아곡류보조식품감독관리강화에 관한 규정 (이하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규정) ¹²⁾ 」 | 시장감독총국, 2019. 1. 2. |
|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영아조제식품통칙」 ¹³⁾ | 위생부, 2010. 12. 21. |
|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캔포장보조식품」 ¹⁴⁾ | 위생부, 2010. 3. 26. |
|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곡류보조식품」 ¹⁵⁾ | |
| 「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조제식품」 ¹⁶⁾ | |
|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조제식품」 ¹⁷⁾ | |
| 「수출입유품검사시험검역감독관리방법」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3. 1. 24. 제정해관총서 2018. 11. 23. 일부개정 |
| 「수출입유품검사시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 시행 관련 요구에 관한 공고」 ¹⁸⁾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3. 4. 15. |
| 「수입영유아조제분유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이하 수입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공고)」 ¹⁹⁾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3. 9. 23. |

출처: 필자 정리

10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24号, 2020년 1월 3일 발표.
 11 《食品生产许可审查通则》,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2016년 8월 9일 발표.
 12 市场监管总局印发《关于进一步加强婴幼儿谷类辅助食品监管的规定》的通知, 国市监食生[2018]239号.
 13 GB 25596-2010 食品安全国家标准 特殊医学用途婴儿配方食品通则.
 14 GB 10770-2010 食品安全国家标准 婴幼儿罐装辅助食品.
 15 GB 10769-2010 食品安全国家标准 婴幼儿谷类辅助食品.
 16 GB 10767-2010 食品安全国家标准 较大婴儿和幼儿配方食品.
 17 GB 10765-2010 食品安全国家标准 婴儿配方食品.
 18 《关于实施〈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有关要求的公告》(总局2013年第53号公告).
 19 质检总局关于加强进口婴幼儿配方乳粉管理的公告(2013年第133号).

영유아 안전
영유아 안전
영유아 안전

III. 영유아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규정 내용

1. 영유아 식품 관련 용어 정의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영아(infant; 婴儿)는 0~6개월의 사람으로, 유아(young children; 幼儿)는 12~36개월의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²⁰⁾

영유아 식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식품은 크게 주식품과 보조식품으로 구분되고 있다.²¹⁾ 이 중 영유아보조식품(婴幼儿辅助食品)은 6월-36월령 영유아의 식용을 위해 공급하는 영유아 곡류보조식품(婴幼儿谷类辅助食品)과 영유아캔포장보조식품(婴幼儿罐装辅助食品) 및 6~36개월 영유아 및 37~60개월 아동의 식용을 위해 공급하는 보식영양보충품(辅食营养补充品)으로 정의되고 있다.²²⁾

영유아 곡류보조식품(婴幼儿谷类辅助食品, cereal-based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은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곡물(예: 밀, 쌀, 보리, 귀리, 호밀, 옥수수 등)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곡물은 건조물질구성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적절한 양의 영양강화제 및 (또는) 기타 보조원료를 첨가하고, 가공제한 6개월 이상의 영아와 유아의 식용에 적합한 보조식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영유아곡물보조식품, 영유아고단백곡물보조식품, 영유아생곡물보조식품, 영유아 비스킷 또는 기타 영유아곡물보조식품으로 분류된다.²³⁾

영유아 캔포장보조식품(婴幼儿罐装辅助食品, canned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이란 식품원료를 처리, 캔포장, 밀봉, 멸균 또는 무균캔포장을 거쳐 상업무균에 도달하여 상온에서 보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의 영유아의 식용에 적합한 식품을 말한다.²⁴⁾

이러한 영유아 보조식품과 함께 영유아 조제식품이 있다. 영유아 조제식품에는 영아 조제식품과 특수의학

20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캔포장보조식품」 3 용어와 정의.

21 「식품안전법」 제26조 제3호에서 영유아 전용으로 공급하는 주/보식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22 「영유아보조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 제1조.

23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3 용어와 정의, 4 제품의 분류.

24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캔포장보조식품」 3 용어와 정의.

용도 영아 조제식품이 있다. 영아 조제식품은 우유기반영아 조제식품과 콩(대두)기반 영아 조제식품 두 가지로 구분된다.²⁵⁾ 특수의학용도 영아 조제식품(特殊医学用途婴儿配方食品)은 특수장애, 질병 또는 의료상황 등의 학상황을 앓고 있는 영아의 영양수요에 초점을 맞춰 설계·제조한 분말상태 또는 액체상태 조제식품을 말한다. 의사 또는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단독식용 또는 다른 식용물질과 배합하여 식용할 때 그 에너지량과 영양성분이 0~6개월의 특수의학상황의 영아의 성장발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²⁶⁾

2. 영유아 식품의 생산허가 관련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은 지방정부(성, 자치구, 직할시시장감독관리부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의 생산허가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²⁷⁾ 식품생산허가의 신청은 양식가공품, 식용류, 유지 및 그 제품 등 수십 가지 식품유형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식품유형에 영유아 식품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조제식품만이 명시되어 있다.²⁸⁾

식품생산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식품생산설비배치도와 식품생산공예절차도, 식품생산주요설비 및 시설리스트, 전임 또는 겸임의 식품안전전문기술자, 식품안전관리자정보와 식품안전관리제도가 포함된다.²⁹⁾ 이와 같은 기본제출서류 외에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의 생산허가는 생산하려는 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 문서와 관련 등록 및 신고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³⁰⁾

식품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절차와 관련,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제조식품,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서는 제품등록 또는 제품조제등록 시 현장조사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현장조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¹⁾

25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영아조제식품통칙」 3 용어와 정의.

26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영아조제식품통칙」 3 용어와 정의.

27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7조 제2항.

28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11조 제1항.

29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13조.

30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14조.

31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21조.

식품생산허가증에는 생산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주소, 생산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식품생산허가증의 부분(副本)에는 식품명세를 기재해야 하고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조제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등기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³²⁾

식품생산허가의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허가연장신청의 경우 기본적인 신청서류 외에 생산품질관리체계운영상황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³³⁾

3. 생산, 판매 관련

(1) 식품원료 등 법정기준에 따른 생산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유, 보조재료 등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증해야 한다.³⁴⁾ 이와 관련,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 및 경영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조제 및 라벨 등의 사항을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신고(备案)해야 한다.³⁵⁾ 영유아 조제분유 등 특수식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한다.³⁶⁾

영유아 조제분유 등 특수식품 생산기업은 등록 또는 신고한 제품조제, 생산공예 등 기술요구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³⁷⁾

32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29조.

33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35조 제2항.

34 「식품안전법」 제81조 제2항.

35 「식품안전법」 제81조 제3항.

36 「식품안전법」 제82조 제1항.

37 「식품안전법」 제82조 제3항.

(2) 생산품질관리체계,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구축 등

영유아 조제분유 등 특수식품과 기타 특정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한 제품과 서로 상응하는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체계의 운영상황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여 그 유효성을 보증하고 소재지 현급지방정부에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³⁸⁾

영유아 조제식품의 생산기업은 원료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품질통제를 시행해야 하며, 출고하는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서는 로트별로 검사시험(逐批檢驗)하여 식품안전을 보증해야 한다.³⁹⁾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 등은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을 위한 기본요구를 명확히 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정보화 수단을 통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지도하며,⁴⁰⁾ 영유아 식품 등 특정사람들에 대한 식품 및 기타 식품안전리스크가 비교적 높고 판매량이 많은 식품을 전문대상으로 하는 추적시스템의 구축을 감독 검사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⁴¹⁾

(3) 라벨, 판매 등

포장된 식품의 포장에 라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라벨에는 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영유아 및 기타 특정사람들에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의 라벨에는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⁴²⁾

보건식품이외의 기타식품에 대해 보건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⁴³⁾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가능한(选择性) 첨가물질을 첨가한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선택가능한(选择性) 첨가물질로

38 「식품안전법」 제83조.

39 「식품안전법」 제81조 제1항.

40 「실시조례」 제17조 제1항.

41 「실시조례」 제17조 제2항.

42 「식품안전법」 제67조.

43 「실시조례」 제38조 제1항.

명명해서는 아니 된다.⁴⁴⁾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의 내용은 등록 또는 신고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특수식품 판매 시 해당 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과 신고 또는 등록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대조해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식품을 보통식품 또는 약품과 섞어두고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⁴⁵⁾

(4) 당국의 관리감독의무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과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의무가 부과되고 있다.⁴⁶⁾

지방정부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위험평가결과 및 식품안전상황 등에 따라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및 횟수를 정하고 등급별 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식품안전연도감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⁴⁷⁾ 식품안전연도감독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첫 번째 감독관리중점 사항으로서 영유아와 기타 특정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을 제시하고 있다.⁴⁸⁾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등록 또는 신고한 영유아 조제분유 등 특수식품의 목록을 제때 공포하고 등록 또는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⁴⁹⁾

당국의 식품에 대한 샘플검사시험은 식품안전표준, 등록 또는 신고한 특수식품의 제품기술요구 및 국가의 유관규정이 확정한 검사시험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⁵⁰⁾

44 「실시조례」 제38조 제2항.

45 「실시조례」 제39조 제2항.

46 「식품안전법」 제74조.

47 「식품안전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48 「식품안전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49 「식품안전법」 제82조 제2항.

50 「실시조례」 제40조.

지방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그 인터넷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신고한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를 공포해야 한다.⁵¹⁾

4. 벌칙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의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영유아 식품안전 관련 위반유형에 따른 벌칙

| 처벌내용 | 위반유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식품안전감독관리 부문이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한 식품을 몰수하며, 위법생산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 위법생산경영한 식품의 상품가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품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가액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안기관이 그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에 대해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⁵²⁾ |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유아와 기타 특정사람들에게만 공급하는 주/보조식품을 생산 및 경영(제2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식품안전감독관리 부문이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몰수하며, 위법생산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영유아 분유 등 특수식품을 생산하거나 등록된 제품조제, 생산공예 등 기술요구에 의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6호). |

51 「실시조례」 제39조 제1항.

52 「식품안전법」 제123조 제1항.

| 처벌내용 | 위반유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상품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품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⁵³⁾ | <p>개별포장방식(分装方式)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해서는 아니되며, 동일 기업이 같은 조제를 이용하여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해서는 아니된다(제7호).</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의 시정명령 및 경고 - 시정하지 않는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 -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중지,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바로 허가증을 취소한다.⁵⁴⁾ | <p>영유아 조제식품생산기업이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조제, 라벨 등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9호)⁵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식품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효하게 운행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10호)⁵⁶⁾ - 특수식품을 보통식품 또는 약품과 섞어두고 판매한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의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재료 등 물품 몰수 -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상품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품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중지,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바로 허가증을 취소한다.⁵⁷⁾ - 식품생산경영기업 등 사업체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이하 법정대표자 등)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의 성질이 악질적이고, 위법행위가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법정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전년도 취득 수입의 1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⁵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성 첨가물질을 첨가한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선택성 첨가물질로 명명한 경우(제3호) - 생산경영한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한 라벨, 설명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

출처: 필자 정리

53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

54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55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9호.

56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10호.

57 「실시조례」 제68조 제1항,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58 「실시조례」 제75조 제1항

IV.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에 관한 특별 규정 주요 내용

이상과 같은 영유아 식품에 관한 일반적인 식품안전규범 외에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 영유아 조제분유

(1) 개요

영유아 조제분유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법」에 일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칙도 제정되어 있다. 예컨대 「식품안전법」 제81조 제4항에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조제를 국무원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등록(注册)할 것과 등록 시 조제연구개발보고서와 기타 조제의 과학성, 안전성을 표명하는 자료(材料)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속하는 식약총국은 2016년 6월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을 제정하였다. 이 방법의 목적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의 조제를 등록·관리하여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⁵⁹⁾ 이하에서는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과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에 관한 중국의 법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감독당국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란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에 사용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및 그 사용량, 그리고 제품 안의 영양성분함량을 말한다.⁶⁰⁾

59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1조.

60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解读, 2016-06-13 18:19 来源: 食品药品监管总局网站, http://www.gov.cn/zhengce/2016-06/13/content_5081775.htm (검색일: 2020. 5. 26).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수입하는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에 적용된다.⁶¹⁾

등록관리업무의 주무부서는 식약총국이며, 식약총국의 행정수리기구가 등록신청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다.⁶²⁾ 식약총국의 식품심사평가기구(이하 심평가기구)가 등록신청에 대한 심평업무를, 식약총국의 심사확인검사시험기구(이하 확인검사기구)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등록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업무를 맡는다.⁶³⁾

(3) 등록절차 및 요건 등

신청대상은 중국 경내에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판매하려는 생산기업과 중국에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출하려는 경외생산기업이다.⁶⁴⁾ 신청인에게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에 적합한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시험능력을 갖출 것, 분말상태의 영유아 조제식품의 양호한 생산규범요구에 부합할 것,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시스템을 시행할 것, 출고제품에 대해 법률·법규와 영유아 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규정한 항목에 따라 로트(Lot; 逐批)별로 검사할 것 등이 요구된다.⁶⁵⁾

제품조제등록의 신청은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조제의 과학성, 안전성을 증명하는 연구개발 및 논증보고서, 그리고 총족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 시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주체자격증명문서, 원/보조재료의 품질안전표준, 제품조제연구개발보고서, 생산공예설명서, 제품검사시험보고서,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시험능력의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⁶⁶⁾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같은 연령대 제품의 조제를 신청할 경우 제품조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 기업이 원칙적으로 3가지 조제계열 9종 제품조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조제계열은 영아조제분유(0~6개월, 1단), 비교적 큰 영아조제분유(6~12개월, 2단), 유아조제분유(12~36개월, 3단)를 포함한다.⁶⁷⁾

61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2조.

62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5조 제1항, 제2항.

63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5조 3항, 4항.

64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7조 제1항.

65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7조 제2항.

66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8조.

67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9조.

같은 그룹회사에 소속된,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의 조제등록 및 생산허가를 받은 100% 출자 자회사는 그룹회사 내 다른 100% 출자 자회사가 이미 등록한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의 조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식약총국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⁶⁸⁾

식약총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심사평가결론에 따라 등록 혹은 등록불가 결정을 내린다.⁶⁹⁾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의 등록이 승인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⁷⁰⁾,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식약총국에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⁷¹⁾

(4) 라벨, 설명서

신청인은 제품조제등록 신청 시 라벨과 설명서 견본서류 및 라벨, 설명서에서 언급한 설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와 관련되는 경우 등록을 취득한 제품조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⁷²⁾

제품명칭 안에 동물성 출처가 있는 경우 제품조제에 근거하여 배합재료표에 사용한 생우유, 분말우유, 유청(단백분) 등 유제품원료의 동물성 출처를 사실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사용한 유제품원료에 2종 이상의 동물성 출처가 있다면 각 동물성 출처 원료마다 그 포함비율을 표기해야 한다. 배합원료표에 식용식물기름의 구체적인 품종명칭을 투입량이 적은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영양성분표에는 영유아 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규정한 영양소 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선택가능한 성분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열거하여야 한다.⁷³⁾

68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11조.

69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20조.

70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23조.

71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27조.

72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30조.

73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31조.

생우유, 원료유분 등 원료 출처를 밝힐 때는 구체적인 출처지역 또는 출처국가를 사실대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우유 원산”, “국외목장 원산”,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⁷⁴⁾

영유아 조제분유의 적용 개월을 표기해야 하며, 동시에 ‘1단, 2단, 3단’의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⁷⁵⁾

라벨과 설명서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질병예방, 치료기능 관련; (ii) 보건효과가 있다는 명시 또는 암시; (iii) 지능발달,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장(腸道)보호 등 기능성의 표현과 기술; (iv)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제품조제 안에 함유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 “미첨가”, “미함유”, “첨가제로” 등의 글자로 미사용 또는 미함유를 강조하는 것; (v) 허위, 과대, 과학원칙 위반 또는 절대화된 내용; (vi) 제품조제등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⁷⁶⁾

(5) 등록취소 및 벌칙

식약총국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조제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업무자가 직권남용, 직무소홀로 등록결정을 부여한 경우;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등록결정을 부여한 경우,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결정을 부여한 경우 등이다.⁷⁷⁾ 또한 식약총국은 기업의 말소신청, 법에 따라 기업이 종료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제품조제등록을 말소한다.⁷⁸⁾

벌칙은 대체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상의 벌금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신청인이 관련사항은폐, 허위자료 및 샘플을 제공하여 제품조제를 등록한 경우 식약총국은 수리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한다. 신청인은 1년 내에 다시 조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사실, 뇌물 등 부정 수단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식약총국은 이를 취소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허가인은 3년 내에 재신청이 불가능 하다.⁷⁹⁾

74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32조.

75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33조.

76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34조.

77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40조.

78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41조.

79 「조제분유조제등록방법」 제43조.

(6) 포장, 동일 조제의 이용 제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개별포장방식(分装方式)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 기업이 같은 조제를 이용하여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해서는 아니 된다.⁸⁰⁾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몰수하며, 위법생산경영에 사용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할 수 있다. 위법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상품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품가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⁸¹⁾ 이와 같은 벌칙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영유아 분유 등 특수식품을 생산하거나 등록된 제품 조제, 생산공예 등 기술요구에 의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⁸²⁾

2.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1) 개요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등이 있다.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규정」의 목적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영유아 곡류(시리얼)보조식품의 생산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생산경영주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영유아 식품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⁸³⁾ 이 규정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의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생산허가는 성급시장감독관리부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⁸⁴⁾

80 「식품안전법」 제81조 제5항.

81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82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

83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규정」 제1조.

84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2조.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은 연령기준에 따른 영유아의 구분,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정의, 제품의 분류, 기술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규정」을 중심으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에 관한 안전관리 법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원료, 식품첨가제, 검사, 식품안전추적체계 등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생산기업(이하 생산기업)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영유아보조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婴幼儿辅助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조건을 유지해야 한다.⁸⁵⁾

생산기업은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또는 겸임의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과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그 직위와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립,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⁸⁶⁾

생산기업은 원료입고 시 확인의무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매년 쌀, 좁쌀 등 주요 원료공급상에 대해 1회 이상 현장심사확인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쌀을 원료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매회 입고되는 쌀의 낱, 카드뮴 등 중금속항목에 대한 검사시험을 해야 한다.⁸⁷⁾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을 생산할 경우 완전한 생산공예과정을 갖춰야 하며, 곡물(쌀, 좁쌀 등)을 주요원료로 하여 생산해야 한다.⁸⁸⁾

생산기업은 식품첨가제사용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표준」⁸⁹⁾,

85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3조.

86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4조.

87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5조.

88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6조.

89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GB 2760).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⁹⁰⁾ 및 그 증보공고 등 표준의 요구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하고,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사용량을 엄격하게 파악통제하고, 범위와 제한량을 초과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⁹¹⁾

출고검사시험제도의 엄격한 시행, 영유아 곡류보조식품표준규정과 국가위생건강위가 발표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중 카드뮴의 임시제한량 수치규정⁹²⁾의 요구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제품의 출고검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일률적으로 출고판매가 금지된다.⁹³⁾

생산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생산통용위생규범」⁹⁴⁾ 등 국가표준에 따라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해당 체계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 자체 검사를 1회 이상 진행하여 그 유효한 운영을 보증하고 지방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⁹⁵⁾

생산기업은 원료조달, 생산가공, 운송, 결제, 저장, 판매 등 핵심통제단계의 전 과정 식품안전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판매자는 영유아 보조식품의 매입, 운송, 결제, 저장, 판매 등 각 단계의 식품안전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⁹⁶⁾ 생산기업 및 판매자는 식품안전품질정보를 진실하게 기록, 보존하여 식품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⁹⁷⁾

90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GB14880).

91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7조.

92 2018년 6월 21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영유아곡류보조식품 중 카드뮴의 임시제한량수치가 0.06mg/kg임을 공고하였다.(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发布婴幼儿谷类辅助食品中镉的临时限量值的公告(2018年 第7号), <http://www.cnhfa.org.cn/fagui/show.php?itemid=365>, (검색일: 2020. 5. 22.).

93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8조.

94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生产通用卫生规范》(GB14881).

95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9조.

96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0조 제1항.

97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0조 제2항.

(3) 위탁가공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위탁인측과 수탁인측은 추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⁹⁸⁾ 위탁 생산 시 위탁인측과 수탁인측은 계약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쌍방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상응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탁인측은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식품이 품질안전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위탁인측은 위탁생산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져야 한다.⁹⁹⁾

위탁생산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포장에 위탁인측의 명칭, 주소와 수탁인측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번호 등의 내용을 함께 표시 해야 한다.¹⁰⁰⁾

(4) 포장, 라벨

영유아 보조식품의 대포장제품을 생산하고 영유아 보조식품의 최종판매포장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생산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¹⁰¹⁾ 개별포장방식으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의 생산은 금지된다.¹⁰²⁾

생산기업은 라벨표시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¹⁰³⁾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¹⁰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특수식사용식품라벨」,¹⁰⁵⁾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¹⁰⁶⁾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사보조영양보충품」¹⁰⁷⁾ 등 식품안전국가표준 규정의 요구에 따라 표지(标识) 및 표시(标注)해야 한다.¹⁰⁸⁾ 라벨은 “영유아 식용” 또는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식용” 등 영유아식용

98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0조 제3항.

99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1조 제1항.

100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1조 제2항.

101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2조 제1항.

102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2조 제2항.

103 《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GB 7718).

104 《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GB28050).

105 《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GB13432).

106 《食品安全国家标准 婴幼儿谷类辅助食品》(GB 10769).

107 《食品安全国家标准 辅食营养补充品》(GB22570).

108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3조 제1항.

전용공급을 표명하는 용어나 도안을 표시한 경우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그 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영아’ 또는 ‘유아’의 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 광고는 진실, 합법해야 하며, 허위·가짜 또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¹⁰⁹⁾ 허위, 과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거나 사기성의 문자, 도형 등의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도 아니 되며, 글자 및 기호의 대소 또는 색깔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¹¹⁰⁾

(5) 당국의 감독관리조치

감독관리부문은 시장, 마트, 영유아 전문점 등을 중점적으로 온오프라인 판매경로에 대한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샘플검사시험업무를 강화하고 불합격 식품 및 그 생산경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¹¹¹⁾

또한 감독관리부문은 영유아 곡류보조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대하고, 식품안전연도감독관리계획에 영유아 곡류보조식품생산기업을 중점검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¹¹²⁾

V. 영유아 수입식품에 관한 특별 규정 주요 내용

1. 개요

이상과 같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법제 외에 영유아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일부 제정시행 중에 있다. 예컨대 수입유제품에 대한 「수출입유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이하 수출입유품관리방법)」(2013. 1. 24. / 2018년 개정), 「수출입유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 관련 요구의 시행에 관한 공고」(2013. 4. 15.) (이

109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3조 제2항.

110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3조 제3항.

111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4조.

112 「영유아곡류보조식품규정」 제15조.

하 「수출입유품 관련」 공고), 「수입영유아 조제분유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이하 수입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공고)」 (2013. 9. 23.) 등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수입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규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수출입유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본 방법은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유품의 검사시험검역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에 의해 2013년 1월에 최초 제정되었고, 해관총서에 의해 2018년 11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총 6장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유품수입, 제3장 유품수출, 제4장 리스크 사전경보, 제5장 법률책임(벌칙), 제6장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입유품에 대한 규정 위주로 간략히 소개한다.

(2)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¹¹³⁾

먼저 유품은 초유, 생유와 유제품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초유는 젖먹이 가축이 새끼분만 후 7일 이내의 우유를 말한다. 생유는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한 젖먹이 가축의 유방에서 짜낸 것으로 아무런 성분의 변화를 주지 않은 보통의 우유(常乳)를 말한다. 젖먹이 가축의 초유, 항생제 사용기간과 약물사용중지 기간의 유즙, 변질유는 생유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제품이란 우유를 주요 원료로 하여 가공완성한 식품으로서, 예컨대 저온살균우유, 멸균우유, 조제우유(调制乳), 발효우유, 치즈 및 가공치즈, 크림, 버터, 무수버터(无水奶油), 농축우유, 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및 우유기반 영유아 조제식품 등 그 생유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가공처리 과정에서 열처리 및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생유제품이다.

113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2조.

2) 처음 대중국 유품 수출당국의 서류제출 및 현장조사

처음으로 중국에 유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주관부문은 중국의 수출입검역기관인 해관총서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의 법률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통제체계, 잔류물감시통제체계, 동물 역병의 감시감독통제체계 및 대중국 수출예정인 제품 종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¹¹⁴⁾ 해관총서는 필요 시 수출국가에 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¹¹⁵⁾

3) 경외(외국)생산기업의 등록, 수출업체의 등록 및 제출서류

중국으로 유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외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 시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유품의 종류, 브랜드를 명확히 해야 한다.¹¹⁶⁾ 대중 수출유품은 수출국가(지역)이 발급한 위생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위생증서에는 유품원료가 건강한 동물에서 왔다는 것, 유품이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역병을 전파할 수 없다는 점, 유품생산기업이 현지 정부주관부문의 감독하에 있다는 점, 유품이 안전하고 사람이 식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야 한다.¹¹⁷⁾

중국으로 유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대리업체 포함)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며, 해관총서는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¹¹⁸⁾ 수출업체가 검역신고 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 ii) 위생증서. iii) 최초 수입한 유품의 경우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사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수입'은 경외생산기업, 제품명칭, 조제, 경외수출업체, 경내수입업체 등 정보가 완전히 서로 동일한 유품이 같은 세관에서 첫 번째로 수입한 경우를 말한다. (iv) 최초 수입이 아닌 유품의 경우 최초 수입검사시험보고서의 사본 및 해관총서가 요구한 항목의 검사시험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v) 수입유품안전위생항목(병원성 박테리아, 미코톡신(진균독소), 오염물질, 중금속, 불법첨가물 등)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한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사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속 5회차 안전위생

114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5조 제2항.

115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5조 제3항.

116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6조.

117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7조.

118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9조.

항목 불합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수입 시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사시험보고서 사본 및 해관총서가 요구한 항목의 검사시험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vi) 사전포장유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문라벨샘플, 원문라벨중문번역본, 중국라벨샘플 등 자료. (vii) 검역심사비준이 필요한 유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등이다.¹¹⁹⁾

수입업체는 유품수입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위험경보제도

해관은 자체 모니터링, 감독관리, 실험실검사시험 등을 통해 유품안전정보를 수집정리한다.¹²⁰⁾ 유품을 수출하는 생산경영자는 위험정보보고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유품안전위험정보응급방안을 제정하고 응급연락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임의 위험정보보고원을 배치해야 하며, 이미 발견한 수출입유품의 회수(리콜)와 처리상황 등 위험정보를 제때에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¹²¹⁾

수입유품에 안전문제가 있어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손해를 이미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유품수입업체는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유품수입업체는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도매상, 판매자에게 도매, 판매의 중지를 통지하고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고 유품회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¹²²⁾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 직속해관은 해당 업체에게 회수명령통지서를 발급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한다.¹²³⁾

119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11조.

120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37조.

121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38조.

122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43조.

123 「수출입유품관리방법」 제44조.

3. 기타

(1) 「수출입유품 관련 공고」

본 공고는 앞서 살펴본 「수출입유품검사시험검역감독관리방법」 시행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유품관리방법」이 적용되는 유품의 범위 조정, 유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외식품생산기업등록제도에 대한 과도기 규정, 검역심사비준이 필요한 수입유품의 종류 등에 추가적인 상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공고」

본 공고는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검사시험신고일로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점, 대포장 영유아 조제분유를 수입하여 경내에서 소분포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최소 소매포장으로 캔포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의 중문라벨은 입경 전에 최소소매포장에 직접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경내에서 라벨 부착은 금지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VI. 결어

이상에서 소개한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영유아 수입식품안전 관련 법제는 크게 「식품안전법」 등 식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영유아 식품에 관한 특별 규정,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입되는 영유아 식품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유아 식품에 적용되는 특별규범은 주로 영유아 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유아 보조식품 중에서도 영유아 곡류보조식품과 영유아 조제분유식품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 영유아 식품에 대한 법제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 「식품안전법」 등 식품안전에 관한 일반 규범과 영유아 식품 관련 특별 규정으로 수입식품도 국내식품과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제분유를 포함하여 영유아가 섭취하는 수입유제품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어 보다 강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국 국내산 영유아 유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수입유제품의 인기가 높은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婴幼儿食品安全监管还需“环环相扣”, <http://www.tlnews.com.cn/2020年05月19日 08:47:18>, http://www.tlnews.com.cn/xwpd/tlxw/content/2020-05/19/content_9051687.htm, (검색일: 2020. 5. 27).
-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解读, 2016-06-13 18:19 来源: 食品药品监管总局网站, http://www.gov.cn/zhengce/2016-06/13/content_5081775.htm, (검색일: 2020. 5. 26).
- 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发布婴幼儿谷类辅助食品中镉的临时限量值的公告(2018年 第7号), <http://www.cnhfa.org.cn/fagui/show.php?itemid=365>, (검색일: 2020. 5. 22).
- 中国奶制品污染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5%A5%B6%E5%88%B6%E5%93%81%E6%B1%A1%E6%9F%93%E4%BA%8B%E4%BB%B6/86604?fr=aladdin>, (검색일: 2020. 6. 20).